

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90일
신청기관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전화번호	
	소재지		

「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」 제32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철강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부장관 귀하

신청인 첨부서류	1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전문인력 양성·훈련사업 계획서 3. 「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 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심사	→	지정 여부 결정	→	결과 회신
신청기관		산업통상부		산업통상부		산업통상부		산업통상부